

역구매론 구매기업 약정서

(구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_____(이하 “판매기업”이라 함) 사이에 체결된 역구매론 계약에 기초하여 판매기업에 대한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구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과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함)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 1 조(목적)

이 약정은 구매기업이 은행의 “역구매론”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2.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3. “지급승인명세”(이하 “승인명세”라 함)라 함은 판매대금 수금을 위해 판매기업이 전송하는 판매자료를 말하며,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
4. “지급승인금액”(이하 “승인금액”이라 함)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
5. “판매기업입금일”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대금을 입금받는 일자리를 말하며, 통상 구매기업의 결제일과 동일한 일자로 지정합니다.
6. “구매기업결제일”(이하 “결제일”이라 함)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
7. “선입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 전에 판매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지급승인기간”이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9. “선입금기간”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선입금된 날로부터 판매기업입금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0. “거치기간”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결제일 이전으로 지정한 경우, 판매기업입금일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자부담주체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분할상환기간”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의 개별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간을 말하며, 이자부담주체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2. “연장기간”이라 함은 승인금액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약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13. “지급보증”이라 함은 승인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승인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4. “일반거래”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 및 은행의 지급승인과 동시에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15. “매매보호거래”라 함은 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명세 전송 후 구매기업의 권리가전(인수) 절차 및 은행의 지급승인에 의해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16. “선입금가능일”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선입금할 수 있는 최초 시작일을 말합니다.
17.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기업뱅킹, Hana CBS, BiCNET 등을 말합니다.
18.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구매자료 전송, 선입금 등 역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 3 조(이용시간)

- ① 은행은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의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 또는 접근매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 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가능하거나 기타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4 조(결제계좌의 지정)

1. 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아래의 결제계좌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구매기업 본인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2. 개별대출금 또는 분할상환대출금 상환을 위한 결제계좌는 역구매론을 위한 전용계좌로 사용하기로 하며, 동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구서 등을 징구하지 않고 인출하여 대출금 및 이자, 수수료등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5 조(이용한도 및 지급보증)

판매기업이 판매대금 수금을 위해 전승한 승인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지급을 보증하며, 승인금액의 총잔액은 원 약정서의 “여신(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기업과 은행과의 계약에 의해 구매기업별 최고승인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신(한도)금액에 불구하고 구매기업별 최고승인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신용공여기간)

신용공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은행과 판매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최장기간이 정해지며, 개별 승인명세의 지급승인기간은 신용공여기간 내에서 판매기업이 승인명세 전송시 건별로 지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 1. 구매기업이 본 약정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급승인기간은 최장 180 일 범위 내에서 은행과 판매기업이 계약한 기간 내로 합니다.
- 2. 구매기업이 본약정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분할상환기간은 최장 36 개월 범위 내에서 은행과 판매기업이 계약한 기간 내로 합니다.
- 3. 구매기업이 본 약정을 통하여 승인금액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연장기간은 최장 180 일 범위 내에서 은행과 판매기업이 계약한 기간 내로 합니다. 단, 분할상환기간이 적용되는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연장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7 조(매매보호의 적용)

승인명세에 대한 매매보호거래 적용여부는 은행과 판매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정한대로 따르기로 하며, 매매보호거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구매기업은 물품 등 검수 후 승인명세 상 판매기업입금일 전영업일까지 기업인터넷뱅킹에서 권리이전(인수)을 하여야 하며, 권리이전(인수) 절차가 완료되어야 판매기업은 선입금이나 만기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판매기업입금일 전영업일까지 권리이전(인수) 하지 않은 승인명세는 판매기업입금일에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제 8 조(대출이자 및 수수료의 운영기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 수금시 발생하는 각종 이자 및 수수료는 은행과 판매기업이 계약한 금리 및 수수료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부담주체가 구매기업인 경우에는 결제일에 구매기업 결제계좌에서 출금합니다.

- ① 대출이자의 종류 및 이자의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입금이자 : 선입금일로부터 판매기업입금일 전일까지 징구하는 이자로서 판매기업이 부담합니다.
 - 2. 거치기간이자 : 승인명세 상 판매기업 입금일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결제일 이전으로 지정한 경우, 판매기업 입금일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 징구하는 이자로서 판매기업이 승인명세 전송시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분할상환이자 : 승인명세 상 분할상환 기간이 지정되는 경우, 구매기업이 원금분할상환시 징구하는 이자로 판매기업이 승인명세 전송시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연장기간이자 : 판매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연장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결제일로부터 실제 결제일까지의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구매기업이 부담합니다.
- ② 취급수수료 : 취급수수료는 아래의 기준에 의해 징구할 수 있습니다.
1. 판매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취급수수료 부담주체 및 수수료금액이 정해집니다.
 2. 구매기업의 결제계좌 지정은행에 따라 차등적용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승인명세의 지급보증, 취소, 변경 및 제한)

- ① 승인명세의 전송,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판매기업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전송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만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합니다.
 2.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 전산조작 오류 및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의 이유로 승인명세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을 통하여 취소 신청하기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가.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을 실행한 경우
 - 나. 판매기업입금일이 도래한 경우
 3. 판매기업의 신청에 의해 취소, 변경된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매매보호거래시 판매기업입금일 전영업일까지 권리이전(인수) 등록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판매기업입금일에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5.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금액에 대하여는, 은행은 강제로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승인명세의 구매기업약정번호, 승인금액, 결제일, 판매기업입금일, 매매보호여부 등은 변경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 등 기타항목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명세에 대한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
1.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 용도 외의 지급승인이 발생하는 등,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구매기업이 약정한 원 약정서 “제 4 조(감액,정지 조항)”에 의하여 은행이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3.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③ 은행은 승인명세를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하며, 구매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승인명세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0 조(개별대출의 실행)

판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는 본 약정에 의해 구매기업의 사전 동의 없이 즉시 지급승인이 이루어지며, 일반거래인 경우에는 선입금가능일로부터, 매매보호거래의 경우에는 권리이전(인수) 등록일로부터 은행이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을 실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승인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① 판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대출이 실행됩니다.
1.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 선입금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2. 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판매기업입금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판매기업입금일 이전에 선입금한 경우, 거치기간 설정에도 불구하고 선입금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3. 거치기간 없이 만기입금하는 경우 : 결제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승인명세상 분할상환기간을 지정한 경우, 결제일 당일을 최초 분할상환일로 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판매기업계좌로 입금됩니다.
 4. 매매보호거래시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구매기업 명의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 ② 개별대출의 실행은 승인명세 건별로 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하여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개별대출금의 상환)

- ① 개별대출금의 결제일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일에 은행 영업시간까지 결제계좌에 상환자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 ② 판매기업이 선입금하지 않아 결제일에 실행된 당일만기대출을 당일 중 상환시에는 별도의 대출이자는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③ 상환순서는 은행이 정하는 자동상환처리 순서에 따르기로 하며, 상환처리시 상환자금이 일부 부족한 경우에도 원금에 대하여 부분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 다만, 결제계좌가 타행계좌인 경우에는 대출실행건별로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전액상환만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④ 연장기간 적용시 해당 연장기간동안에 결제계좌에 상환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입금되는 금액 범위내에서 매영업일 자동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
- ⑤ 개별대출금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물품 등의 매매계약에 의해 구속되지 않으며, 물품 등의 하자나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개별대출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기업의 허위매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기한이익의 상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즉시 미결제대금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 가. 판매기업의 통지가 있는 경우
 - 나. 판매기업과 구매기업간의 물품구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다. 은행과 판매기업간 역구매론 업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 라. 구매기업에 대해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가 등록된 경우
 - 마. 본 업무에 의한 거래가 법률 및 감독기관에 의해 금지된 경우
2.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선입금이 실행된 경우에는 그 결제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3. 은행과 판매기업간의 역구매론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결제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지급보류)

승인명세 또는 판매기업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이 송달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1. 구매기업으로 송달되는 경우
 - 가. 해당 승인명세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구매기업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취소후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에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 나. 판매기업이 전액 선입금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하여 압류대상 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합니다.
 - 다. 일부 선입금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액에 대하여 은행에 지급보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은행을 제 3채무자로 하여 송달되는 경우
 - 가. 특정 승인명세에 대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선입금하지 않은 승인잔액이 있으면 지급보류등록을 하기로 합니다.
 - 나. 판매기업에 대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금액에 달할 때까지 지급보류등록 하며, 추가적인 지급승인이 금지됩니다.
3. 지급보류등록한 승인명세의 처리
 - 가. 지급보류 등록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판매기업입금일 도래시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을 보류하고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 나.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원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타행출금이체 신청약관동의)

역구매론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물품 등의 구매대금 결제시 결제계좌를 타행으로 지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CMS 출금이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CMS 출금이체 약관

1.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참가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참가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참가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됩니다.
 9. 출금이체 해지요청시 동일계좌에 동일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시 참가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10.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정보제공의 동의)

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구매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및 승인금액 및 개별대출 상환내역, 연체내역 등의 거래내역을 판매기업에게 제공함에 동의 합니다.

제 16 조(계약의 체결 및 변경)

- ① 역구매론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 본 약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본 약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④ 필요한 경우 은행과 판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역구매론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구매기업의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승인하며, 은행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17 조(면책)

-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판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② 본 계약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15 조(위험부담·면책조항)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8 조(약정의 효력)

-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내 지급승인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이 약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본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제 19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구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0 조(기타 특약사항)

--

(서명날인)

20 년 월 일

구매기업(채무자) : _____(인)

주 소 :

역구매론 구매기업 거래 신청서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 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1. 중심기업(판매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심기업코드	
-----	--	---------	--	--------	--

2. 구매기업 정보 (협력기업코드 :)

법인명 (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명)		대표이사(대표자) 생년월일	
업 태		종 목	
주요취급품목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업 <input type="checkbox"/> 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공공 및 기타		

※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에 “✓” 표시 합니다.

3.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팩스번호	
담당자휴대전화번호		담당자이메일	
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수신 <input type="checkbox"/> 미수신	이메일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수신 <input type="checkbox"/> 미수신

4. 첨부서류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본인 자서 날인시 생략가능),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위의 기본서류 외에 여신거래 약정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역구매론 구매기업 약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구매기업) : _____(인)